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8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 안호영 · 김윤덕 · 윤미향

윤준병 · 송옥주 · 임종성

이소영 • 이수진 • 진성준

양이원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 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환경 변화 적응의 고려,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의 고려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 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6까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 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복원사업
 - 나.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 다. 제45조에 따라 시행되는 생태통로 설치사업
 -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습지보호지역 등 복원사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원사업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제5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장의2(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 2.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보완조사 및 관찰 결과
 -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결과
 -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결과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 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여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환경복원 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의 장

-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 인(私人)
- ④ 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라한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 4. 모니터링·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

-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 사업 실시자는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 요한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기준·방법·절차, 비용의 차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 경복원사업 실시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유지·관리에 반 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5조의3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1. ~ 18. (생 략) | 1. ~ 18.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 |
| | <u>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u> |
| | <u>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u>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
| | <u>을 말한다.</u> |
| | <u>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u> |
| | <u>태·경관보전지역의 복원</u> |
| | <u>사업</u> |
| | 나.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하 |
| | 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
| | 다. 제45조에 따라 시행되는 |
| | 생태통로 설치사업 |
| |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 |
| | 항에 따라 시행하는 습지 |
| | 보호지역 등 복원사업 |
|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복원사업 |
|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 |
|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의 행위제한 등) ①·② (생략)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 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u>「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u> <u>3조제1항제1호</u>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⑤ (생략)

-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추진할 수 있다.
 - 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

 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의 행위제한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3)-----

·

- 1. ~ 4. (현행과 같음)
- 5. <u>「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u> 4조제1항제1호----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

 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 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 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 는 경우
-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

 되어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 2. 제31조에 따른 정밀조사, 보완조사 및 관찰 결과
-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

화 관련 생태계 조사 결과

- 4. 「습지보전법」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결과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여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u>청장</u>
-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

정기관의 장

-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④ 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실시자"라 한다)는 자연환경복원사업실시자"라 한다)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 4. 모니터링·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 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 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 사업 실시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 른 환경부장관의 승인·변경승 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는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 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지생대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u>각호</u>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방법·절차, 비용의 차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실시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유지·관리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방법·절차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 용도) |
|----------------|-----|
| | |
| | |
| <u>각 호</u> | |
| | |
| | |
| | |
| | |
| | |

사용하여야 한다.

- 1. ~ 9. (생 략)
-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

 원

11. (생략)

<신 설>

12. ~ 14.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u><삭 제></u>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45조의3에 따른 자연 환경복원사업

12. ~ 14. (현행과 같음)